

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10. 군수
- 나. 회부일자 : '99. 10. 23
- 다. 상정일자 : '99. 10. 22 (제79회 임시회 제4차 산업·건설위원회 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농산과장 박종일

나. 개정사유

-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농지 임대차 규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임대차의 상한을 지역별 농작물 별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조례로 정한것을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문찬주)

- 농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임차료 상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화순군 농지관리 위원회의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를 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합치되도록 개정한 조례로써,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답변요지

“ 생략 ”

5. 토론요지

“ 생략 ”

6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7. 첨부 : 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명 “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”를 “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농지임차료상한에관하여”를 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”로 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“【별표2】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명 <u>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상한에 관한 조례</u></p>	<p>제명 <u>화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농지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농지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농지 임차료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 농지 관리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- - - - - - - - - -</p>
<p>제11조 (임차료의 상한) 법 제25조 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 2와 같다.</p>	<p>삭 제</p>